

아현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303호(2010.8.19.)호로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47호(2011.11.24.)로 아현재정비촉진계획(아현2구역)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129호(2020.04.02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13-143호(2013.08.22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19-130호(2019.09.05.)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6-73호(2016.06.09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19-188호(2019.12.05.)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2-6호(2022.01.13.)호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2-222호(2022.11.29.)호로 건축물공사완료 고시된 마포구 아현동 662번지 일대의 아현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하여 고시하며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7조의 의제되는 사항과 같은법 제65조의 준용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서 관계 법률에 의한 인.허가 등의 고시.공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.

2024년 2월 23일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기본사항

- 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/아현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
- 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 - 위 치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62번지 일대
 - 면 적 : 65,450.30㎡(공부)/65,553.90㎡(측량)
- 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성 명 : 아현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: 이영선)
 - 주 소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28가길 19(아현동) 3층
- 라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44개월
- 마. 사업시행계획인가일 : 2013.08.22.
- 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
 - 재건축사업의 경우로 공공시행자, 지정개발자 방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없음
- 사. 건축계획 및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: 변경 없음

아.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: 변경 없음

2. 변경사유 및 내용

가. 사업시행기간 변경

- 기 존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20개월
- 변 경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44개월

3. 유의사항

관계서류는 마포구청 주택상생과(☎02-3153-1652)와 아현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☎02-3147-1559)에 비치합니다.